

『일본, 휴대용 LPG 버너(가스 토치)의 법적 규제 대상화』 심층분석 보고서

2024. 10.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7311, 8416.20
통보국	일본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52,848 (2023)
작성기관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5
붙임. 규제 참고자료	6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 개정 예정을 2024년 9월 30일 통보 하였음
 - 본 규정은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 이른바 가스 토치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에 대한 사전 고시 및 의견수렴을 주 내용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술 요구사항 개정안은 추후 고시될 것으로 보임

- (규제요지)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가스 토치)의 법적 규제 대상화

TBT 통보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PN/835 	통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9-30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의 일부 개정 ▪ Revision to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Securing of Safety, the Optimization of Transac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nd the Ministerial Order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Products Concerning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정보, 표시 요구사항, 인간의 건강 및 안전 		
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초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2월 예정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일로부터 60일 (2024년 11월 29일)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2월 예정 ▪ 경과조치 기간 : 1년 (2026년 2월까지)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p>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LPG) 장비 및 기기(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 포함) ▪ Liquefied Petroleum Gas(LPG) equipment and appliances (including portable petroleum gas burners) 		
<p>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휴대용 토치 		
<p>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848 	<p>HS Co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11, 8416.20

-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 METI는 2024년 8월 27일 진행된 소비경제심의회에서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가스 토치)의 법적 규제 대상화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현재 가스 토치에 대한 법적 안전 요구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업계 등에서 소비자에 안전에 대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음
 - 가스 토치의 제조 및 판매량 증가,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 증가를 이유로 가스 토치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높아짐

- 규정 주요 내용
 - 휴대용 액화석유가스(LPG) 버너(가스 토치)의 규제 대상화
 - 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를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 및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 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가스 토치의 법적 규제 대상 포함으로 개정이 예정된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이 채택되면 관보에 고시될 예정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법령

- 소비경제심의회에서 제시된 규제 대상화 방향성
 - 규제 대상이 되는 휴대용 LPG 버너(가스 토치)에 대한 논의
 - 2024년 8월 27일 진행된 소비경제심의회에서 METI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가스 토치)의 적용 범위 및 예외 범위를 제안하였음
 - 적용 대상 제시안
 - (적용 범위) 일반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 8월 27일 소비경제심의회에서 제안된 적용 범위는 나사식이 아닌 용기를 사용하는 토치 중 연결부에서 화염 위치까지 거리가 350mm 이하인 제품임
(※ 해당 제품은 [표 1]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됨)


[표 1]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는 휴대용 액화석유가스 버너 (METI 소비경제심의회 자료 참고)

트ーチ의長さ	CB缶(カセットボンベ)を使用するもの		アウトドア缶を使用するもの		ねじ込み缶(吸収材入り)を使用するもの
	接続部から火口までが350mm以下のもの	接続部から火口までが350mmより長いもの	接続部から火口までが350mm以下のもの	接続部から火口までが350mmより長いもの	
主な用途	家庭でのあぶり調理など	草焼き(農業用)、道路舗装など	木炭や焚火への着火など	草焼き、土壌の害虫駆除など	工事等の業務使用、店内でのあぶり調理など、おもに産業用途
外觀イメージ					

- (예외 범위) 다음과 같은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
 - 배관 공사용으로 가스 호스를 통해 연결하는 제품 (가스 용기를 기울여 사용하는 일이 없어 액화석유가스의 역류가 일어나기 어려움)
 - 풀 태우기(草焼き)나 들판 태우기(野焼き) 작업에 사용되는 공사용 제품 (가스 용기와의 연결부에서 화염 위치까지 거리가 멀어 용기 폭발의 위험이 낮음)
 - 흡수제를 넣고 봉해 안전성이 높은 용기와 나사식으로 연결되는 제품

[표 2] 예외 대상의 예시 (METI 소비경제심의회 자료 참고)

配管工事用としてガスホスを介して取り付ける製品の例



容器接続部から加工先端までの距離の違いによる事故リスクの違い

火口先端から容器接続部までの距離 < 火口先端から手前に戻る火の長さとなる場合の例

300mm (火口先端から手前に戻る火の長さ)

200mm (火口先端から容器接続部までの距離)

向かい風を受けて戻ってきた火により容器が過熱されるため、容器爆発のリスクが高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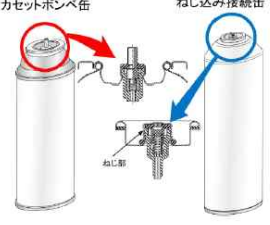
火口先端から容器接続部までの距離 > 火口先端から手前に戻る火の長さとなる場合の例

300mm (火口先端から手前に戻る火の長さ)

350mm (火口先端から容器接続部までの距離)

向かい風を受けて戻ってきた火により容器が過熱されないため、容器爆発のリスクが低い

吸収材を封入した「ねじ込み式」ガストーチ



カセットボンベ ねじ込み接続缶

【出典】令和4年度産業保安等技術基準策定調査研究等事業 (ガストーチの安全性能に関する技術基準の策定等調査事業) 報告書より抜粋

□ 제안된 개정 일정

- (발행일) 2024년 12월 예정
- (발효일) 2025년 2월 예정
- (과도 기간) 2026년 2월까지 (발효일로부터 1년)

관련 법령 및 표준

○ 현행 규정

-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URL](#))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液化石油ガス器具等の技術上の基準等に関する省令 ([URL](#))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

□ 규제원문 출처

○ 규제원문 출처

- WTO TBT 질의처 ([URL](#))

-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사전 의도 공고 안내 ([URL](#))

* 일본의 대외무역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KOTRA와 같은 조직임

○ 2024년 8월 27일 소비경제심의회 자료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홈페이지

· 2024년 8월 27일 소비경제심의회 제품 안전 부회 링크 ([URL](#))

· 휴대용 액화석유가스용 버너(가스 토치)의 규제 대상화에 대한 자료 ([URL](#))

□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규제 대상

-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액화석유가스법)의 규제 대상인 액화석유가스 기기 및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기는 다음과 같음

[표 3]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 1)

<p>一 조정기 (1시간에 감압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질량이 30k 이하인 것에 한함)</p> <p>二 액화석유가스 풍로(가스레인지)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p> <p> ㄱ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용기가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 장착되는 구조인 것</p> <p> ㄴ 액화석유가스 소비량 총합이 14kW (가스 오븐이 있는 것은 21kW) 이하인 것으로, 버너 1개당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5.8kW 이하인 것 (ㄱ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함)</p> <p>三 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것에 한함)</p> <p>四 액화석유가스용 연결 금구가 부착된 고압 호스 (내경 10mm 이하, 길이 1.2m 이하의 고무호스를 사용한 것에 한함)</p> <p>五 액화석유가스용 버너가 부착된 옥조 가열기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 전용 온수부가 있는 경우 91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밀폐 연소형 및 옥외형 제품은 제외함)</p> <p>六 옥조 가열기 (액화석유가스용 버너를 사용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용 버너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인 구조에 한하며, 밀폐 연소형 또는 옥외형(외부에 설치되어 비바람의 영향을 견디는 구조를 가진 것)과 액화석유가스용 버너가 설치된 제품은 제외함)</p> <p>七 액화석유가스용 옥조 버너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옥조 가열기에 부착된 제품은 제외함)</p>
--

- 八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19kW 이하인 것에 한함)
- 九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밸브 (연소용 기계 또는 기구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구조인 것을 제외함)
- 十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 농도 표시 기능이 있는 제품 및 휴대용 제품은 제외함)
- 十一 액화석유가스용 연결 금구가 부착된 저압 호스 (내경 15mm 이하, 길이 1.2m 이하의 고무호스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 十二 액화석유가스용 내진 자동 가스 차단기 (관과 연결되는 나사부의 내경이 60mm 이하이며, 3.5kPa 이하 게이지 압력의 가스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것에 한함)

[표 4]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 2)

- 一 액화석유가스용 가스레인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용기가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 장착된 구조인 것에 한함)
- 二 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개방 연소형, 밀폐 연소형, 및 옥외형인 것은 제외함)
- 三 액화석유가스용 버너가 부착된 욕조 가열기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 전용 온수부가 있는 경우 91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밀폐 연소형 및 옥외형 제품은 제외함)
- 四 욕조 가열기 (액화석유가스 버너를 사용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 버너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인 구조에 한하며, 밀폐 연소형, 옥외형 제품 및 액화석유가스 버너가 부착된 제품은 제외함)
- 五 액화석유가스용 욕조 버너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21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욕조 가열기에 부착된 제품은 제외함)
- 六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 (액화석유가스 소비량이 19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개방 연소형, 밀폐 연소형, 및 옥외형 제품은 제외함)
- 七 액화석유가스용 가스 밸브 (연소용 기계 또는 기구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구조인 것을 제외함)